



면적

268.08km²(경기도의 2.6%)

덕양구 165.57㎢, 일산동구 59.95㎢, 일산서구 42.56㎢



인구/세대 1,074,907명(내국인수) / 464,380세대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및 명칭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 재량권을 부여 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행정구역

3개구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총 44개동)



재정규모

3조 8,961억원

일반회계 2조 6.514억원 특별회계 기금 1조 2,447억원



학교/학생 356개교 140,613명



의료기관 병원 **1,273**개 (종합병원 7개)



공공도서관 **19**개





문화공간 32 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체육시설 294개 (골프장 7개)



사업체 / 종사자 110,660개 381,6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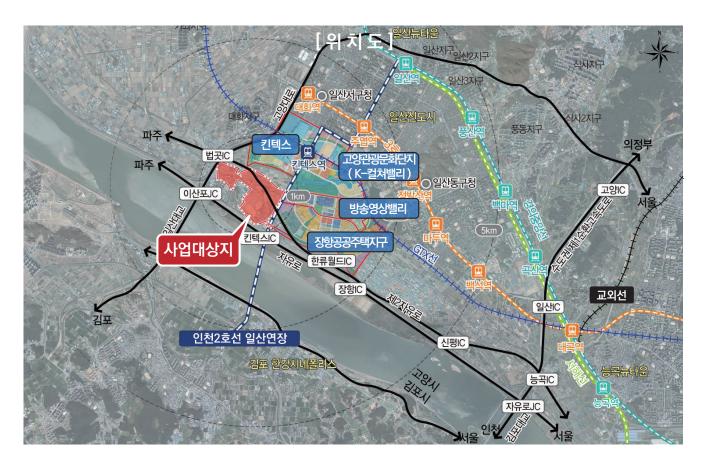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기업 혁신활동의 집적지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출

- 혁신클러스터는 특정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집적지 -



일산서구 약 2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분양-2026년 준공 목표

[킨텍스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 다양한 개발사업 동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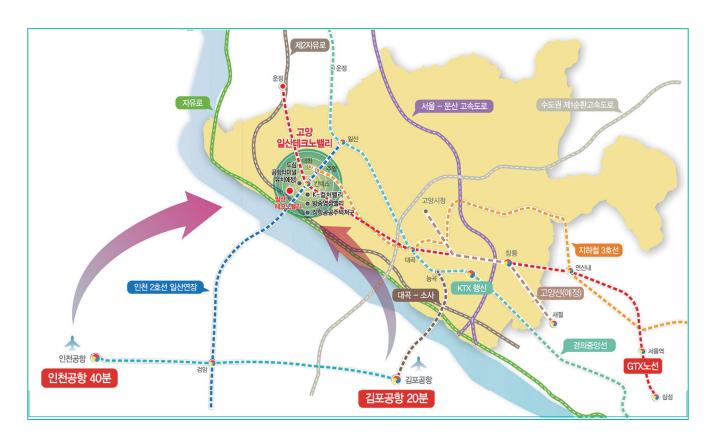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개요

사	업	명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면		적	871,761m²(약 26만평)
사	업	비	8,493 억원
사	업 기	간	2016년~2026년 (2019년 도시개발구역지정)
사입	법시 형	뱅자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동 시행
주요	유치	업종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우수한 접근성 확보

[GTX-A, 경의중앙선, 인천2호선 등 연결로 교통의 요충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20분→서울(삼성)]

대한민국교통의 허브, 고양시



- **> GTX-A노선**(운정~서울역 2024년 하반기 우선개통, 2028년 완전개통 예정)
- >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인천2호선 연계
- > GTX와 KTX 연계 중심지
- >제3기 창릉신도시, 대곡 역세권 6개 노선 연계



- > 자유로, 제2자유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
- ›서울, 김포, 인천, 파주 등 주변도시와 연결
- >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



- > 인천공항 40분 내외
- > 김포공항 20분 내외

경기북부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킨텍스, 장항공공주택지구 동시개발을 통한 투자가치 제고]





[전시컨벤션] 킨텍스 제3전시장 0시아 6위, 세계20위 글로벌 전시장 보유

[사업기간:2019년~2026년] 전시면적 18만 m² 달성



[방송문화] K-컬처밸리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 [테마파크, 아레나, 상업시설 등]

[사업기간: 2016년~2026년 예정] 경제효과 25조원, 17만명 고용 창출



[방송문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 거점조성 방송영상 문화(한류) 집적단지

[사업기간: 2019년~2026년] 방송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



[주게] 장항공공주택지구

청년벤처타운 조성 및 창업지원 & 청년 주거안정 특화단지

[사업기간: 2016년~2025년] 청년중심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첨단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및 연구시설용지를 분양, 개발할 기업 유치 中

[입주기업의 근무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녹지와 공공지원시설, 복합지원시설이 균형적으로 배치]



	구분			건축물 용도				
-1517UT	건폐율	60% 이하	• 공장 및 부디	•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참고)				
첨단제조 시설용지	용적률	380% 이하	〈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지				
(산업단지)	높이	7층 이하	C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T1117141	건폐율	60% 이하		〈 주용도 〉	〈 부수용도 〉			
지식기반 시설용지	용적률	380% 이하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분양형 제외)			
시크이시	높이	10층 이하	벤처기업집적	^넊 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711110		소프트웨어진	<u>l</u> 흥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폐율	60% 이하	교육연구시설	1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연구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용적률 380% 이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동물 및 식물 시설				
	높이	7층 이하	방송통신시설		※ 건축연면적의 30% 이하까지 허용			

※ 상세내용 & 각 필지규모 붙임(상세계획인가 고시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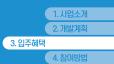


첨단제조시설 24개, 지식기반시설 73개, 연구시설 5개 획지 공급

[공원, 녹지비중이 21.4%로 쾌적한 첨단산업 업무지구로 조성]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합계	871,761	100.0		-
	소계		15,748	1.8		-
주거 용지		단독주택용지	11,478	1.3		53세대
		준주거시설용지	4,270	0.5	근리	빈생활시설
	싱	업용지	12,648	1.5		-
		소계	314,263	36.0		-
산업 시설	:	첨단제조시설용지	68,361	7.8		-
용지		지식기반시설용지	215,393	24.7		-
į		연구시설용지	30,509	3.5		
		소계	455,660	52.3		-
		계	206,462	23.7		-
	도로	도로	203,977	23.4	방수설비(5,216㎡), 공원(6,876㎡) 포함 공원(7,523㎡) 제외	
도시		보행자도로	2,485	0.3	도로(223㎡) 제외	
기반		주차장	15,786	1.8		7개소
시설 용지		공원	120,591	13.8	8개소	도로(6,876㎡) 제외
		녹지	66,615	7.6		17개소
		공공공지	9,186	1.1		4개소
		방수설비	31,163	3.6	도로(5,216㎡	î), 녹지(973㎡)제외
		전기공급설비	5,857	0.7	한국전력	ᅾ공사 변전시설
		소계	73,442	8.4		-
기타 세설	-	도시지원시설용지	20,258	2.3		-
용지		복합지원용지	51,520	5.9		-
	위험들	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1,664	0.2		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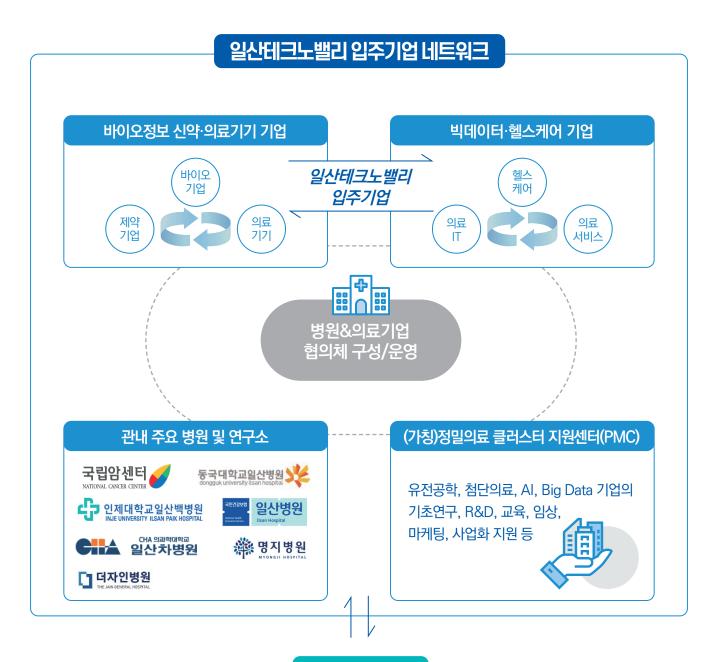
^{*}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및 지원기관과 협력지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관내 병원, 연구소, 인프라 및 네크워트를 형성하도록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u>외부기관</u> 협력

국민건강보험 등 데이터 결합기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의약품 생산]

판교 테크노밸리 [의료 ICT 기술]

임상검체 분석기관 [포스텍, 대전 등]

서울 대형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사업지원 인프라 I 메디컬·바이오분야









인프라(시설·장비) 지원







- (국립암센터) 의료 R&D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지원
- 국가암데이터센터를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 가능
- 신약개발 인프라(바이오뱅크, GMP) 활용 가능
- 전임상을 위한 동물실험실 활용 가능
- 그 외 국립암센터 보유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활용 가능
- (동국대병원) 개방형실험실 인프라 제공
- 개방형실험실 R&D 장비 활용 가능 (신약개발 GMP시설, 의약품생산 CMO설비 구축 중)
- (일산병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방 및 데이터 분석인프라 제공



공동 R&D 협력









- (국립암센터) 항암관련 R&D 및 사업화 협력
- 후보물질, 의약품, 효능 및 안전성평가 등 기업과 협력
- 암센터 내 R&D사업단과 협력하여 공동연구와 사업화 협력
- (동국대병원)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연구(AI 의료기기 등)
- (백병원) 치료제 안전성 및 유효성 공동연구
- 고혈압 제제, 당뇨질환 병용요법,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전립샘비대증, 항암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등 가능
- (명지병원) 의료 빅데이터 결합 공동연구
- 조직재생, 디지털헬스 서비스, 체외진단, 근골격계 조직재생, 치매 디지털치료 및 마커, 면역세포치료제, 항암평가플랫폼, 인체유래물 분야 등 가능



전임상·임상시험 지원









- (국립암센터) 전임상 및 임상연구 협업, 인프라 및 데이터 활용지원
- (동국대병원) 뇌MR 영상데이터 및 임상데이터 지원
- (백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명지병원) 개발제품 전임상, 임상 유효성평가 협업



네트워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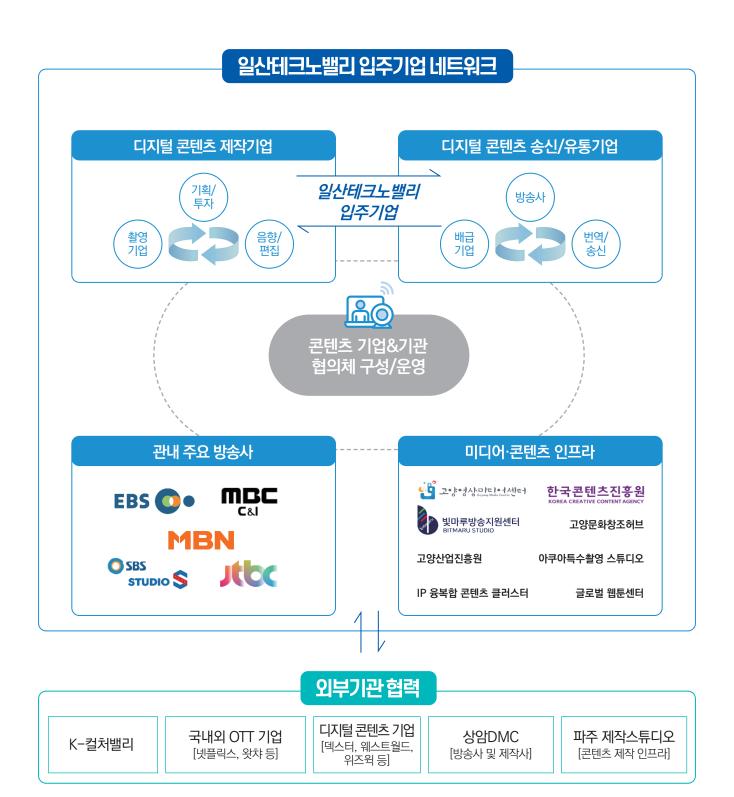


-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연구소-지역병원-기업 협력
- (동국대병원) 개방형실험실 입주기업과 네트워킹
- (명지병원) 세포치료제 연구소-기업-병원 네트워킹
- (명지병원)기획-후보물질 발굴-전임상-임상-인허가컨설팅
- (백병원) 해외 병원경영 및 의료서비스 역량강화 컨설팅

입구에백 4.참여방법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및 지원기관의 협력지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전문 실무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 관내 기업과 교육-취업 연계
- 기획, 제작, 촬영, CG, 음향 등 인재 양성
-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 협회, 교육기관 등 협력



콘텐츠 페스티벌행사 개최

- 콘텐츠 분야별, 장르별 페스티벌 개최
- 관내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 사업화·대중화 촉진
- '일산테크노밸리=콘텐츠 융합산업' 이미지 구축



고용량 콘텐츠 저장/관리/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지원

-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서버실 구축
- 데이터 서버실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신규 콘텐츠 개발지원

- 영세 중소기업 및 제작자의 창작자금 지원
- 관내 기업, 기관과 제작 및 사업화 협력지원
- 콘텐츠 제작기업 및 창작자 유입 기대





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예정

[초기 투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 제공]



토지매입비 지원

- 관련근거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

- 지원내용: 일산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당 토지매입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관련근거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3조

- 지원내용 :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각각 지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고양시 선정 (고양시 내 1.25km² → 일산테크노밸리 포함)

- 지원내용: 벤처기업에 취득세, 재산세 최대 50% 감면 및 5개 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등) 면제



유망 중소·벤처기업 위한 펀드(격년제) 운영

- 고양벤처 1호펀드 운영중: 2020년~2028년 - 고양벤처 2호펀드 운영중: 2022년~2030년 - 고양벤처 3호펀드 운영중: 2024년~2032년



- 온라인 신청 : 기업SOS넷

오프라인 상담 :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운영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운영 예정]



금융지원사업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시, 이자차액 보전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지원
마케팅·판로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G-Fair Korea 고양시 단체관 운영 고양시 기업상품관 운영(킨텍스 전시회 참가) 고양시 기업홍보관 운영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고양시 기업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시설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기업입주시설 운영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기술개발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G-디자인개발 지원 기술닥터 사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고양시 중소기업 P바로지원 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특화산업지원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ICT산업 활성화 지원 고양시 콘텐츠 기업 지원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	 28청춘창업소 운영 고양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고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인증·인센티브지원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고양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일자리지원	•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기업애로지원	• 기업애로 상담·지원 창구 운영

4. 참여방법

정보안내 및 향후계획

🄰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계획 및 분양정보

-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NAVER, ➡m)에서 일산테크노밸리 검색
 - 또는 URL www.ilsantechnovalley.or.kr 직접 입력
- 연락처 및 상담신청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031) 8075-3215~6, 3220
- 참여절차 및 향후계획
 - 기업 투자의향 조사 및 접수
 - '25년 필지별 분양공고 예정(최고가 경쟁입찰 및 사업계획 공모입찰)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입찰참여
 - 위원회 평가 및 공급 대상 기업(컨소시엄) 선정
 - 선정기업 입주/분양계약

》 향후계획

- 2025년 분양공고 예정(최고가 경쟁입찰 및 사업계획 공모입찰)
 - 사업설명회 일정, 분양공고 일정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입찰참여
 - 위원회 평가를 통한 용지 공급 대상 기업(컨소시엄) 선정











₩ 도시지원시설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전역(III <i>)</i>	위치	면적(m²)	면적(평)	니프
7		20,258	-	20,258	6,128	-
지원	1	11,519	-1	11,519	3,484	획지의 분할 불가
시전	2	8,739	-1	8,739	2,644	복시의 군일 물기

₩ 복합지원용지

브러며	가구번호	기구버 S	구번호 면적(㎡)		획지	ΗП
블럭명		. [전역(III)	위치	면적(m²)	면적(평)	- 비고
계		51,520	_	51,520	15,585	-
		20.029	-1	20,158	6,098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복합지원		39,928	-2	19,770	5,980	획지분할 가능
	2	11,592	-1	11,592	3,507	획지의 분할 불가

₩ 상업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회지 역지				비고
클릭경	기구인호	가구번호 면적(m²) ——	위치	면적(m²)	면적(평)	n 17;
7	1	12,648	-	12,648	3,826	-
			-1	2,682	811	
YFOI	1	7,193	-2	2,445	740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상업		-3	2,066	625		
	2	5,455	-1	5,455	1,650	획지의 분할 불가

₩ 첨단제조시설용지(계속)

ᆸᅯᇛ		면전(2)		비고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면적(평)	
7:		68,361	_	68,361	20,679	_
			-1	2,597	786	
	2		-2	2,596	785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첨단			-3	2,638	798	
심인			-1	3,042	920	
			-2	3,023	914	
			-3	2,725	824	

₩ 첨단제조시설용지

ㅂ긔대	기구비소	D4 T4 / 2\		획지		ш¬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면적(평)	비고
7:		68,361	_	68,361	20,679	
			-1	2,285	691	
			-2	2,572	778	
			-3	2,573	778	
	•	19,792	-4	2,618	792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3	19,792	-5	2,473	748	획지분할 가능
			-6	2,573	778	
			-7	2,499	756	
			-8	2,199	665	
첨단			-1	4,967	1,503	
1 22			-2	4,842	1,465	
			-3	2,986	903	
		27,288	-4	2,981	902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4	27,200	-5	3,012	911	실시의 문질 합당 절기
			-6	4,078	1,234	
			-7	2,264	685	
			-8	2,158	653	
	6	4,660	-1	2,190	662	취기이 보충 충대 보기
	•	4,000	-2	2,470	747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 지식기반시설용지(계속)

브러데	기기버스	[대 대		획지		비고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면적(평)	미포						
7:		215,393	_	215,393	65,156							
			-1	2,008	607							
	1	18,395	-2	2,823	854	획지의 분할 · 합병 불가						
		10,393	-3	11,622	3,516	취시의 포탈 : 합당 물기						
			-4	1,942	587							
			-1	1,453	440	· 획지의 분할 · 합병 불가						
	2	6 354	-2	1,453	440							
TIAL			6,354	-3	1,724	522	식시의 도달 : 합당 돌기					
지식			-4	1,724	522]						
	•		•		3		•	4 206	-1	2,198	665	히지이 보하고하면 보기
		4,396	-2	2,198	665	획지의 분할 · 합병 불가						
		10.020	-1	4,806	1,454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4	10,029	-2	5,223	1,580	획지분할가능						
		11 422	-1	7,060	2,136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5	11,423	-2	4,363	1,320	획지분할가능						



₩ 지식기반시설용지(계속)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270	기구인호 	한국(1117)	위치	면적(m²)	면적(평)	
7	4	215,393	_	215,393	65,156	-
	6	4,002	-1	1,795	543	회지의 분할 · 합병 불가
		4,002	-2	2,207	668	숙시의 문원 : 합성 원기
		10,263	-1	5,347	1,61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7	10,203	-2	4,916	1,487	획지분할가능
			-1	1,998	604	
	8	6,018	-2	1,944	588	획지의 분할 · 합병 불가
			-3	2,076	628	
	9	5,031	-1	5,031	1,522	획지의 분할 불가
			-1	1,349	408	
			-2	1,349	408	
	10	6,745	-3	1,349	408	획지의 분할 · 합병 불가
			-4	1,349	408	
			-5	1,349	408	
			-1	3,297	997	
	•	9,891	-2	3,297	997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3	3,297	997	
	12		-1	2,397	725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분할가능
지식			-2	2,422	733	
		14 407	-3	2,421	732	
		14,487	-4	2,422	733	
			-5	2,422	733	
			-6	2,403	727	
	13	3,970	-1	3,970	1,201	획지의 분할 · 합병 불가
			-1	2,163	654	
			-2	2,172	657	
	14	12,709	-3	2,092	633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	12,709	-4	2,041	617	획지분할가능
			-5	2,125	643	
			-6	2,116	640	
			-1	2,481	751	
	15	7,441	-2	2,490	753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분할 가능
			-3	2,470	747	
			-1	2,481	751	
	16	7,441	-2	2,490	753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분할 가능
			-3	2,470	747	복시눈 <u>알</u> 가능



₩ 지식기반시설용지

브리데	기구비송	D4.T4 / 2)		획지		w-z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면적(평)	비고			
7	4	215,393	_	215,393	65,156				
			-1	2,226	673				
	•	6,591	-2	2,150	65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분할 가능			
			-3	2,215	670	7162110			
			-1	3,883	1,175				
	18	9,730	-2	3,031	917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3	2,816	852				
			-1	3,820	1,156				
	19	11,978	-2	4,024	1,217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3	4,134	1,251				
	20		<u> </u>	<u> </u>	F 7F4	-1	2,872	869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5,754	-2	2,882	872	획지분할 가능			
 지식		21	6,005	-1	2,997	90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시작	41	0,005	-2	3,008	910	획지분할 가능			
			-1	3,333	1,008				
			-2	3,556	1,076				
	22	20,670	-3	3,715	1,124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22	20,670	-4	3,366	1,018	획지분할 가능			
			-5	3,358	1,016				
			-6	3,342	1,011				
	23	4,472	-1	2,279	689	히지이 보하 하면 보기			
		4,4/2	-2	2,193	663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1	3,819	1,155				
	24	11,598	-2	5,192	1,570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3	2,587	783				

₩ 연구시설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 저 (_~ ²)		획지	비고		
	기구인도	면적(m²)	위치	면적(m²)	면적(평)		
계		30,509	_	30,509	9,229		
연구	1	11,393	-1	4,646	1,405	획지의 분할·합병 불가	
		11,393	-2	6,747	2,041	식시의 문을 합성 실기	
	2	10,128	-1	10,128	3,064	획지의 분할 불가	
	3	8,988	-1	8,988	2,719	획지의 분할 불가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용도			
단독 주택 용지	단독 ①~⑥	60% 이하	180% 이하	4층 이하	5가구 이하	점포 겸용 일반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다목, 마목, 사목(12m 이상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제외), 아목, 차목의 장의사, 파목의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너목, 더목, 러목(바닥 면적 100m2 이하 노래연습장 제외) 제외)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준주거 시설 용지	준주거 ①、②	60% 이하	380% 이하	7층 이하	- 제3 - 제4 안미 - 제9 - 제10 - 제11	호 제2종근	다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상업 용지	상업 ①、②	70% 이하	700% 이하	15층 이하	- 제3 - 제4 - 제5 - 제6 - 제7 - 제9 - 제10 - 제11 - 제11 - 제2	호 제2종 ; 호 문화 및 호 종교시· 호 판매시? 호 의료시· 0호 교육연 3호 운동시 4호 업무시 0호 자동차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설 중 종교집회장(다만,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설 중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7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설(오피스텔 제외) 설 중 관광숙박시설 당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첨단 제소 용지	첨단 ①~⑤	60% 이하	380% 이하	7층 이하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 유치업종은 다음에 한함			



=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용도		
지시	지식 기반 시설 용지		380% 이하	10층 이하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기숙사 제외)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의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기반 시설		60% 이하			부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의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에 한하며, 설치시「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고양시 고시 제2021-118호)」에 따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라우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연구 시설 용지 ①~③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기숙사 제외)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의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	60% 이하	380% 이하	/ 7층 이하	부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관련법 등에 의한 기숙사는 불가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주차장 용지	주①~⑦	90%이 하	380%이 하	<i>7층</i> 이하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선기자동차 충전시설		



붙임 2. 건축물에 관한 계획(3/3)

구남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용도		
	12 12				주 용 도	용 ㆍ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	
지원 시설		380% 이하	15층 이하	부 수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에 한하며, 설치시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 운영 가이드라인(고양시 고시 제2021-118호)」에 따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마권관련시설 제외)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복합 지원 용지	복합 지원 ①,②	60% 이하	380% 이하	13층 이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용지	유①	60% 이하	300% 이하	5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一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다만, 제1종근린생활시설(나목에 한함) 및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 주유소 및 부대시설 한한다.		
전기공급 설비용지	전기①	60% 이하	380% 이하	10층 이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一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시설, 아목 변전소, 자목 일반업무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제25호 발전시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우수도시 대한민국 대표 신한류문화 관광도시

대한민국 첨단미래도시, 고양특례시

